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3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세부평가방법
	(3)활용실적	(1)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설계에 적용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4)R&D사업 참여실적	(1)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요건>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 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 0.6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 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4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2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 하나의 사업(과제)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과제 전체, 일반과제의 경우에는 일반과제 전체를 말한다. 2) 2012.1.1부터 R&D사업 참여실적 항목을 폐지한다
마.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10	수행중인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